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채권추심자의 개인정보 누설 처벌 강화 등 〉

■ 박덕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973호)

2025.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주요내용	3
2.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덕흠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 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채무상태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주변인과의 관계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채권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채권추심자의 관계인에 대한 방문·연락시의 금지행위 위반 및 채무자·채권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5조(벌칙) <신설>	제15조(벌칙) ①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신설>	③ 제8조의3제1항 ¹⁾ 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자	<삭제>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2. (생략)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⑤ -----

-----.

<삭제>

2. (현행과 같음)

제16조(양벌규정) ① -----

-----제15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의-----

-----.
-----.

②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3.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u>4. 제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u> 5. ~ 7. (생략) ③ · ④ (생략)	<u>다.</u> 제17조(과태료) ① ----- -----. 1. 2. (현행과 같음) <u>3. 제8조의3제2항²⁾을 위반한 자</u> <u>4. (현행 제3호와 같음)</u> ②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

각 요건별로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벌칙의 수준을 살펴보면,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제10조제1항 위반)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면서(안 제15조제1항) 양벌규정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안 제16조제2

-
- 1)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명칭
 3. 방문 또는 말·글·음향·영상·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항), ②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한 경우(제8조의3제1항 위반)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하면서(안 제15조제3항) 양벌규정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며(안 제16조제2항), ③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할 때 본인과 채권자의 성명·명칭·연락 목적 등을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등을 알게 하는 경우(제8조의3제2항 위반)의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있음(안 제17조제1항제3호).

< 개정안에 따른 변경 >

의무 규정	위반 내용	구분	현행법	개정안
제10조 제1항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	벌칙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양벌 규정	3천만원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 벌금
제8조의 3제1항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양벌 규정	1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벌금
제8조의 3제2항	관계인 방문·연락시 본인과 채권자의 성명·명칭·연락 목적 등을 밝히지 않거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등을 누설	과태료	1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2. 검토의견

우리 형법 체계에 비추어볼 때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범죄 억제 효과가 크고, 징역형과 벌금형의 선택형이 있는 죄보다 징역형만 있는 죄가 더 무겁다는 점에서,³⁾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수단인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의 상한을 높여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인에게 방문·연락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최대한 억제하고 채무자와 관계인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헌법에서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표현의 자유가 갖는 구체적인 한계로까지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바,⁴⁾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만한 정보를 누설하여 타인의 인격적 법익이나 권리에 대한 침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공익은 매우 절실한 측면이 있음.⁵⁾

아울러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분야임.⁶⁾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58 판결

4) 대한민국헌법 제21조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이러한 견지에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 누설의 경우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적 상황, 법익침해의 정도가 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통해 국민의 법감정을 충족시키고 범죄를 예방·근절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벌금형 삭제 및 벌칙 상향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 ②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한 2가지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을 상향하고 있음.

해당 범죄에 있어서도 정보의 누설 범위나 방문·연락의 빈도·시각 등에 있어 위반행위의 심각성이나 피해의 정도가 다양하고 비난 가능성의 경중이 다를 수 있는데, 경미한 범죄에도 벌금형의 여지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것은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관의 양형 재량을 축소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책임 이상의 형이 선고될

6)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므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 아니된다.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40)

가능성은 없는지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⁷⁾

이와 같은 견지에서, 특히 징역형의 상한이 3년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적 경미범죄에 속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음.⁸⁾

또한 개정안과 같이 개인정보·신용정보 누설죄의 징역형 상한을 5년으로, 관계인 방문·연락죄의 징역형 상한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같은 법 내에서 처벌 간 형평성·균형성 등의 측면도 함께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과 현행법에 따른 벌칙의 수준 비교 >

의무 규정	위반 내용	현행법	개정안
제10조 제1항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 목적 외로 이용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제9조 제1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8조 의3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년 이하 징역

7) 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더라도 “5년/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죄질이 가벼운 경우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도 가능하므로 과중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음.

8) 김혜경,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6년), p.95

제1항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	1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9조 제4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제9조 제5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9조 제6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9조 제7호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1조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제8조의4	변호사 아닌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 관련 소송		

현행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죄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제9조제1호 위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⁹⁾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개인정보 누설죄(5년 이하의 징역)가 폭행·체포·감금의 죄보다 법정형이 더 중해지게 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제9조제2호 또는 제3호 위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¹⁰⁾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재·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기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므로, 죄의 구성요건이 보다 엄격한 앞의 죄에 비해 법정형이 더 중해짐.

9)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10) 제15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채권추심자의 정보누설죄 등의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을 상향하는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행위의 비난가능성 정도, 처벌의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형벌 체계상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문 의 처
02)6788-5054